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토보고서**



2021.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0. 29.

기획 행정 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달서구청장(청렴감사실)
- 제출일자: 2021. 10. 15.
- 회부일자: 2021. 10. 15.
- 검토기간: 2021. 10. 18. ~ 10. 22.(5일간)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 ⇨ (개정) 지방자치법 제21조
-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청구 연령기준 삭제 및 감사청구 주민의 수 하향(안 제2조)
 - (현행) 19세 이상 주민 190명 ⇨ (개정) 150명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안 전반)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1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행정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비해당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입법예고(2021. 8. 11. ~ 9. 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1. 1. 12.)됨에 따라 인용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청구 연령기준 삭제 및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190명”에서 “150명”으로 주민의 감사청구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주권이 구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현 행]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개정] 2022. 1. 13. 시행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시·도: 300명 이상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3.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제15조(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